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lottecastle.co.kr) 운영과 견본주택 사전방문 예약제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롯데캐슬 이스트폴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 예약한 해당 날짜 및 시간 이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인원은 사전방문 예약하신 고객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롯데캐슬 이스트폴 대표번호(☎1533-161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바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7.21.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이들말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와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최초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 재공급	○	○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

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 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간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롯데캐슬 이스트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6억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할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으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 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자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07월 31일(월)	08월 01일(화)	08월 02일(수)	08월 09일(수)	08월 12일(토)~ 08월 18일(금)	08월 21일(월)~ 08월 25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10:00~16:00)	방문계약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오기 포함)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5195호(2023.07.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7층 ~ 지상 48층 6개동, 총 1,063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6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12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230	01	074.9200	74	74.9200	23.8800	98.8000	50.5900	149.3900	16.4690	88	9	9	15	2	8	43	45	2		
		02	084.8600A	84A	84.8600	26.0400	110.9000	57.3000	168.2000	18.5426	195	19	20	35	6	17	97	98	4		
		03	084.7300B	84B	84.7300	26.4100	111.1400	57.2100	168.3500	18.5591	44	4	4	8	1	4	21	23	1		
		04	084.8600C	84C	84.8600	26.0400	110.9000	57.3000	168.2000	18.5426	18	2	2	3	1	2	10	8	2		
		05	084.8600D	84D	84.8600	26.0400	110.9000	57.3000	168.2000	18.5426	16	2	2	3	0	1	8	8	-		
		06	101.8800A	101A	101.8800	32.0900	133.9700	68.7900	202.7600	22.3525	84	-	8	-	2	-	10	74	-		
		07	101.8800B	101B	101.8800	32.0900	133.9700	68.7900	202.7600	22.3525	26	-	2	-	1	-	3	23	2		
		08	101.8800C	101C	101.8800	32.0900	133.9700	68.7900	202.7600	22.3525	24	-	2	-	1	-	3	21	1		
		09	124.5800	124	124.5800	37.8900	162.4700	84.1200	246.5900	27.1844	44	-	4	-	1	-	5	39	1		
		10	125.6700P	125P	125.6700	40.9700	166.6400	84.8600	251.5000	27.7257	2	-	-	-	-	-	0	2	-		
							138.5200	138	138.5200	41.6400	180.1600	93.5400	273.7000	30.1731	90	-	9	-	3	-	12
합계											631	36	62	64	18	32	212	419	15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주택형	074.9200	084.8600A	084.7300B	084.8600C	084.8600D	101.8800A	101.8800B	101.8800C	124.5800	125.6700P	138.5200
약식표기(타입)	74	84A	84B	84C	84D	101A	101B	101C	124	125P	13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세대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 기)	해당동·호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3.11.27	2024.01.30	2024.03.27	2024.06.27	2024.09.27		2024.12.27
74	101동 5호	4층	1	616,616,000	423,384,000	-	1,040,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312,000,000	
		5~9층	5	628,474,000	431,526,000	-	1,060,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318,000,000	
		10~19층	10	634,403,000	435,597,000	-	1,070,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321,000,000	
		21~29층	9	640,332,000	439,668,000	-	1,080,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324,000,000	
		30~39층	10	652,190,000	447,810,000	-	1,10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330,000,000	
		40~48층	9	658,119,000	451,881,000	-	1,110,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333,000,000	
	103동 1호	4층	1	628,474,000	431,526,000	-	1,060,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318,000,000	
		5~9층	5	634,403,000	435,597,000	-	1,070,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321,000,000	
		10~19층	10	640,332,000	439,668,000	-	1,080,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324,000,000	
		21~29층	9	652,190,000	447,810,000	-	1,10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330,000,000	
		30~39층	10	658,119,000	451,881,000	-	1,110,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333,000,000	
		40~48층	9	669,977,000	460,023,000	-	1,130,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339,000,000	
84A	101동 1호	21~25층	5	806,344,000	553,656,000	-	1,360,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408,000,000	
		26~29층	4	847,847,000	582,153,000	-	1,430,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429,000,000	
		30~37층	8	859,705,000	590,295,000	-	1,450,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435,000,000	
	101동 2호	4층	1	758,912,000	521,088,000	-	1,280,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384,000,000	
		5~9층	5	764,841,000	525,159,000	-	1,290,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387,000,000	
		10~19층	10	770,770,000	529,230,000	-	1,30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390,000,000	
		21~25층	5	806,344,000	553,656,000	-	1,360,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408,000,000	
		26~29층	4	847,847,000	582,153,000	-	1,430,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429,000,000	
		30~39층	10	859,705,000	590,295,000	-	1,450,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435,000,000	
	102동 1호	40~42층	3	865,634,000	594,366,000	-	1,460,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438,000,000	
		21~25층	5	806,344,000	553,656,000	-	1,360,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408,000,000	
		26~29층	4	847,847,000	582,153,000	-	1,430,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429,000,000	
84A	102동 2호	30~33층	4	859,705,000	590,295,000	-	1,450,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435,000,000	
		4층	1	758,912,000	521,088,000	-	1,280,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384,000,000		
		5~9층	5	764,841,000	525,159,000	-	1,290,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387,000,000		
	102동 2호	10~19층	10	770,770,000	529,230,000	-	1,30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390,000,000	
		21~25층	5	806,344,000	553,656,000	-	1,360,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408,000,000	
		26~29층	4	847,847,000	582,153,000	-	1,430,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429,000,000	
		30~39층	10	859,705,000	590,295,000	-	1,450,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435,000,000	
		40~41층	2	865,634,000	594,366,000	-	1,460,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438,000,000	
		3층	1	747,054,000	512,946,000	-	1,260,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378,000,000	
	103동 2호	4층	1	758,912,000	521,088,000	-	1,280,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384,000,000	
		5~9층	5	764,841,000	525,159,000	-	1,290,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387,000,000	
		10~19층	10	770,770,000	529,230,000	-	1,30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390,000,000	
21~29층		9	782,628,000	537,372,000	-	1,320,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396,000,000		
30~32층		3	794,486,000	545,514,000	-	1,340,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134,000,000	402,000,000		
33~39층		7	859,705,000	590,295,000	-	1,450,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435,000,000		
40~48층		9	865,634,000	594,366,000	-	1,460,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438,000,000		
3층		1	764,841,000	525,159,000	-	1,290,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387,000,000		
4층		1	770,770,000	529,230,000	-	1,30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390,000,000		
103동 5호	5~9층	5	782,628,000	537,372,000	-	1,320,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396,000,000		
	10~19층	10	788,557,000	541,443,000	-	1,330,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133,000,000	399,000,000		
	21~25층	5	824,131,000	565,869,000	-	1,390,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417,000,000		
	26~29층	4	859,705,000	590,295,000	-	1,450,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435,000,000		
	30~39층	10	871,563,000	598,437,000	-	1,470,000,000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441,000,000		
	40~48층	9	883,421,000	606,579,000	-	1,490,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447,0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현장 공정상 공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으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로세 통합), 인지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판매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약식표기)		74	84A	84B	84C	84D	101A	101B	101C	124	138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4	1	1	-	-	-	-	-	-	8
	장기복무 제대군인	2	4	1	-	1	-	-	-	-	-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4	1	1	-	-	-	-	-	-	8
	중소기업 근로자	2	3	1	-	1	-	-	-	-	-	7
	장애인	1	4	-	-	-	-	-	-	-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50%)	5	10	2	1	1	4	1	1	2	5	32
	경기도, 인천광역시(50%)	4	10	2	1	1	4	1	1	2	4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35	8	3	3	-	-	-	-	-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6	1	1	-	2	1	1	1	3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8	17	4	2	1	-	-	-	-	-	32
합계		43	97	21	10	8	10	3	3	5	12	21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성/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점자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 낙점자가 기타 수도권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미적용 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6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7.21.(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

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 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7.21.(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및 1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자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 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청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건축물 종류</td> <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 시에는 주택소유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제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방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7.3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일반공급	1순위	2023.08.01.(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8.02.(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신청 접수자의 경우 해당 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를 지참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 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8.09.(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8.12.(토) ~ 2023.08.18.(금) 건본주택 방문 접수(10:00 ~ 16:00) 장소 : 롯데캐슬 이스트폴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8.21.(월) ~ 2023.08.25.(금) 건본주택 방문계약(10:00 ~ 16:00) 장소 : 롯데캐슬 이스트폴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8.09.(수) ~ 2023.08.18.(금)(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8.09.(수)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롯데캐슬 이스트폴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방문예약제 -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 공지 (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 추정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서약서 및 약속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⑥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⑦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⑪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⑫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⑬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신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④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④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⑦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⑨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롯데캐슬 이스트폴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⑩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⑪ 소유 부동산 자산 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⑫ 재산세 납부 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류 제출
		○	⑭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본인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건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분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⑤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분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롯데캐슬 이스트폴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⑧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고)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⑨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⑩ 소유 부동산 자산 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⑪ 재산세 납부 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⑫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류 제출
		○	⑬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제3자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② 위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 득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세무서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②,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① 세무서, 해당 직장
	무직자(만 19세 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월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지원부,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 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동서류	○		①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③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⑥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⑪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⑫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사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점제	○		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⑥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음)

VII	계약체결 안내
-----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08.21.(월) ~ 2023.08.25.(금) / 10:00 ~ 16:00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③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④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⑤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⑥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액(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억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 35만원)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대금	농협은행	계약금	301-0291-3359-91	(주)무궁화신탁	

		중도금 및 잔금	301-0291-3359-91	(주)무궁화신탁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 안내
--	--	----------	------------------	----------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10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주)무궁화신탁 명의의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될 예정이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써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화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중도금 대출 불가 등)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고지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 내 발생한 대출이자(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 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에어컨

① 시스템 에어컨 I (기본 품목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제조사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74	삼성전자	침실1(안방) + 거실 + 주방	5,700,000	570,000	5,130,000
84A, 84B, 84C, 84D			5,800,000	580,000	5,220,000
101A, 101B, 101C			6,300,000	630,000	5,670,000
124			6,500,000	650,000	5,850,000
125P			6,300,000	630,000	5,670,000
138			6,600,000	660,000	5,940,000

② 시스템 에어컨 II (전실 품목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제조사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74	삼성전자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8,700,000	870,000	7,830,000
84A, 84B, 84C, 84D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8,800,000	880,000	7,920,000
101A, 101B, 101C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9,800,000	980,000	8,820,000
124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멀티룸 + 거실 + 주방	10,500,000	1,050,000	9,450,000
125P		하층 : 침실1(안방) + 침실2 + 거실 + 주방, 상층 : 침실3 + 가족룸 + 멀티룸	13,500,000	1,350,000	12,150,000
138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멀티룸 + 거실 + 주방	11,000,000	1,100,000	9,90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에도 기존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됩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제조사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쿠쿠	하이브리드 쿡답(2인덕션 + 1하이라이트)	480,000	48,000	432,000
	삼성전자	전기 오븐	350,000	35,000	315,000

		식기세척기	850,000	85,000	765,000
		냉장, 냉동고 / 김치냉장고(비스포크)	5,500,000	550,000	4,950,000

3) 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1,500,000	150,000	1,350,000
74	스타일업(바닥형)	유럽산 원목마루	12,000,000	1,200,000	10,800,000
84A, 84B, 84C, 84D			13,000,000	1,300,000	11,700,000
101A, 101B, 101C			16,000,000	1,600,000	14,400,000
124			19,500,000	1,950,000	17,550,000
125P, 138			21,500,000	2,150,000	19,350,000
74	거실 스타일업(벽부형)	거실 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픽처레일(거실뒷벽)	6,300,000	630,000	5,670,000
84A, 84C, 84D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픽처레일(거실뒷벽)	4,200,000	420,000	3,780,000
84B		거실 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픽처레일(거실뒷벽)	7,900,000	790,000	7,110,000
101A, 101B, 101C		거실 아트월, 소파 뒷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 /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픽처레일(거실뒷벽)	5,500,000	550,000	4,950,000
124		거실 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픽처레일(거실뒷벽, 복도)	8,100,000	810,000	7,290,000
125P		거실 아트월, 주방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계단실 시트판넬 / 픽처레일(거실뒷벽)	12,000,000	1,200,000	10,800,000
138		거실 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픽처레일(거실뒷벽, 복도)	9,000,000	900,000	8,100,000
74		거실 스타일업(조명형)	거실우물천정 + 간접등	500,000	50,000
74	주방 스타일업 I	주방벽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 캐슬 미드웨이 선반	1,800,000	180,000	1,620,000
84A, 84B, 84C, 84D			1,500,000	150,000	1,350,000
101A, 101B, 101C, 124, 125P, 138	주방 스타일업 II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 캐슬 미드웨이 선반	1,700,000	170,000	1,530,000
74	욕실벽 타일	타일(외산 600*600)	200,000	20,000	180,000

4) 가구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사양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74, 84A, 84C, 84D	침실1(안방) 불박이장	일반	3,800,000	380,000	3,420,000
84B			4,000,000	400,000	3,600,000
101A, 101B, 101C, 124, 138			4,400,000	440,000	3,960,000
125P			4,700,000	470,000	4,230,000
74	침실3 불박이장	일반	1,000,000	100,000	900,000
84A, 84C, 84D			1,100,000	110,000	990,000
101A, 101B, 101C			1,150,000	115,000	1,035,000
124			1,200,000	120,000	1,080,000
138			1,300,000	130,000	1,170,000
125P			1,500,000	150,000	1,350,000
74	침실3	서재형 시스템 선반	20,500,000	2,050,000	18,450,000
84A, 84C, 84D	주방 가구	주방 수입가구(폐발가사) / 외산 싱크볼(알타이녹스 W940)	19,000,000	1,900,000	17,100,000
84B			23,500,000	2,350,000	21,150,000
101A, 101B, 101C			30,500,000	3,050,000	27,450,000
124			31,500,000	3,150,000	28,350,000
125P			20,500,000	2,050,000	18,450,000
138			34,500,000	3,450,000	31,050,000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잔금 납부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아래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될 예정이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일 이전 납부 시 이자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계좌구분	금융기관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농협은행	계약금	301-0291-3379-81	(주)무궁화신탁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 안내
	농협은행	잔금	301-0291-3379-81	(주)무궁화신탁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X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홍보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및 연출품목 전이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등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기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조경식재계획과 각 동 필로티 출입구, 문주 등이 추가 설치 또는 디자인, 색채, 재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난간 등은 사용자 편의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전정,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후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조경석, 부대복리시설,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 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풍하중의 기본설계풍속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사업시행계획인가로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준공일정을 고려하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분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초등학교는 서울양남초등학교 예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승인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설계 공지 내용
도로 및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장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공동주택(분양)은 1-1획지에 해당함.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은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공원이 아니므로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체식 자전거 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이 문화공원 및 소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이나 시설, 규모, 디자인 등이 시공여건 또는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장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공공청사(광진구청)가 단지 내에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이 되어 설치됨. 광진구는 공공청사의 대지지분과 시설에 대한 구분소유권 및 청사전면 외부공간, 지상2층 중정,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며, 수분양자는 광진구의 구분소유권 및 전용사용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관리규약(안)에 동의하여야 함. 광진구의 구분소유권 및 전용사용권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체와 광진구 간의 협약 및 인·허가 등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장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역역 3번출구가 개량되어 단지 내에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되어 설치되며, 연결통로로 저층부 판매시설과 연결됨. • 구의역과 본 단지의 건축물 사이에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이와 관련하여 2호선 관리청인 서울교통공사와 체결된 협약서(추후 변경 포함) 상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수분양자(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등) 입주 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철도연결통로 관련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준공 전까지 발생하는 변경 인·허가에 대한 일체의 동의 - 구의역과 본 건축물 사이 연결통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냉난방 유지장치 추가, 외장재료의 변경 또는 심의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의견 수용(부분수용 포함)에 따라 공사가 추가될 수 있음. - 연결통로와 관련된 모든 시설(대지 내 출입구 등 일부시설 포함)은 추후 서울교통공사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예정이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구의역과 본 단지의 건축물 사이에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포함) 후 연결통로 공사 시작 전 관할행정청인 광진구청과 철도시설을 기부채납받는 서울교통공사와 체결을 진행함에 따라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모든 사항에 동의함.(사업시행자 협약 체결 후 기부채납 협약체결 - 본 연결통로(일부)에 대한 시설소유권은 구분지상권의 형태로 서울교통공사가 소유함)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통 단지 주변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서측 18미터 신설 도시계획도로(중(집)2-480)는 인접 자양9촌치관리구역 및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음. • 단지 서측 18미터 신설 도시계획도로(중(집)2-480)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장기안과 단기안을 제시하여, 인접구역과 용벽이 설치되는 단기안으로 설치 예정이며, 추후 인접 자양9촌치관리구역 및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진행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되거나, 장기안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완화차로가 설치된 주변 도로의 시설물 및 보도 등을 관리청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보도 일부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관리청의 도로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북측공구와 남측공구 건축물은 폭 14미터 신설 도시계획도로(중(집)2-479) 상부에 연결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음.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레벨이 조정되는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사용승인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
단지 주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공공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장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단지 내에 공동주택과 타 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공공청사,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며, 이에 따라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1-2획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별도 시행중인 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당 사업장의 북측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및 지상 선로가 위치하여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당 사업장 북측도로(아차산로) 지중에 통신구가 있으며, 통신구의 환기구가 1-1획지 내 문화공원 인근에 계획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층·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함.
대지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계 공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전체 구역면적 78,147㎡ 중 도로 총 15,609㎡, 공원(문화공원, 소공원) 총 4,095㎡를 기부채납하고, 별도 시행중인 1-2획지(행복주택) 3,095㎡를 제외한 1-1획지 대지면적(사업부지) 55,34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으로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팬스설치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따라 단지 외곽 경계 또는 펜스를 설치할 수 없음.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장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1-1획지에 해당하며, 폭 14미터 신설 도시계획도로(중(집)2-479)로 북측공구와 남측공구로 분리되나, 하나의 단지로 관련 인·허가, 평가, 심의 등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음. • 당 현장은 2018년 8월 최초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 신청(2018년 12월 완료), 2019년 1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2019년 12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 공동주택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및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 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 상체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계획(학교, 도로망, 공원, 공공업무시설 등) 및 개발계획은 인·허가관청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과 구의역 간의 연결통로, 남측부지 간의 연결통로, 단지 내 기부채납되는 공공업무시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규모나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과 단지 외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임. • 향후 본 아파트의 주변 신축행위로 인하여 건축사항과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서울특별시의 건축입면 다양화 디자인 정책으로 동일한 주택형 단위세대라도 층수에 따라 발코니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지하 2층 ~ 지상 2층)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과 관련한 업종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인 '공공업무시설'은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 보건소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광진구청의 계획에 따라 사용용도 및 운영방안 등 일체 사항이 변경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복합단지 내부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24시간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로서 본 아파트에서 일반인의 보행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 복합단지 내부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보행통로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한 사항으로, 각 동 출입구에서의 이용성 및 편의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음. •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및 공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상의 정비기반시설로서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면적 변경 및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급면적에 변경을 주지 않는 범위 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상 경미한 변경 포함)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는 공급계약 시 사전 동의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판단하여 진행함.

구분	설계 공지 내용
<p>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84A, 101A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CG 및 분양홍보물,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홍보물(리플릿,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각종 시설(도로, 차도,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 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영상(사이버모델하우스), 모형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부분투시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 게시되거나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본인의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CG, 일러스트, 이미지컷 및 개요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 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아트웍,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 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닛 디퓨저 위치, 개수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영상(터치스크린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홍보영상 등)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건본주택, 공급안내문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다용도실, 발코니, 하향식 피난공간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사용 공간의 축소 및 벽체 줄 눈이 시공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차함, 환기디퓨저, 홈네트워크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본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공급안내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인·허가 도서 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74, 84A, 84TA, 84TB, 84B, 101, 101TA, 101TB, 124, 125P, 138로 구분되어 있음. • 금회 분양의 주택형 표기는 관련 인·허가, 평가,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사용된 주택형의 표기와 일부 상이하므로, 주택형의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84TA→84C, 84TB→84D, 101→101A, 101TA→101B, 101TB→101C), (74, 84A, 84B, 124, 125P, 138은 동일) 이하 변경된 주택형으로 표기. •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구, 가전기기 등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 주택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추가 선택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

구분	설계 공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을 하여야 함.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홍보물(건본주택, 모형, CG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및 색상,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식재 및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광고·홍보물에는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세부현황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현장을 꼭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건본주택, 모형, CG 등)에 표현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3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영,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건본주택, 분양홍보물, 인쇄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으로 함)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같은 자재라 할지라도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무늬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제공되는 강마루의 색상 및 패턴은 자재특성 상 건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천정 및 벽 마감재는 건본주택 소방법에 따라, 건본주택용 방염벽지가 시공되었으며 실제 시공되는 마감자재와는 무관함.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광진구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이 비내력벽으로 변경되거나 비내력벽이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제공품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임.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장수명주택인증 내용 중 "배관의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난방배관은 이중관으로 적용함"에서 난방배관은 보일러-분배기의 난방메인관을 지칭함.
외관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단지의 주동 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당,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사업주체의 결정,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본 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당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사업장은 단지내에 공동주택과 타 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공공청사,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는 주거복합 건축물이며, 이에 따라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 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빔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방 안전매트 구간과의 간섭, 소방차 등 각종 서비스 차량동선의 간섭으로 인하여 빔공해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단지에는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2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24시간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이므로 당 단지에서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할 수 없으며, 각 동 출입구에서의 이용성 및 편의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단지 전체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함.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함.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상 3층 옥상정원에 미술작품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조망 및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선관, 환기창, 트라이에어리어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일부 세대는 옥외보안등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기

구분	설계 공지 내용
	<p>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지상 1층, 지상 3층(옥상정원)에 있으며,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고,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거복합 건축물의 특성상 지상 1층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판매시설 등 타 시설 사이에 위치하며, 각 출입구의 동선은 타시설과의 간섭이 있음. • 주동 출입구 층에는 낙하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각 층에 제연실(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됨. • 본 공사 시의 시공여건 또는 디자인 개선에 따라,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 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 조정디자인(식재, 시설품, 구조물, 조정바닥패턴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 출입구 및 지상 3~8층(일부)은 지정 화강석, 외부용 페인트 및 석재뿔칠 혼합마감임. • 커뮤니티 시설의 외부 입면은 지정 화강석 마감 및 창호임.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 시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내부에 기둥, 벽체 등은 색채 디자인 반영으로 일부 석재 뿔칠이 시공됨. • 인·허가 절차 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계단은 지상3층 커뮤니티센터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02동과 103동 사이에 남측공구와 연결되는 연결브릿지가 설치예정임. • 지상 3층 옥상정원에는 비상차로가 설치되며, 남측공구와 연결되는 연결브릿지는 비상시에 소방차의 이동 통로로 이용됨 • 남측공구(임대주택)과 금회 분양 아파트는 동일 단지로서 인·허가부터 소셜믹스로 계획된 사항으로, 남측공구와 연결되는 연결브릿지를 입주자가 임의 폐쇄할 수 없으며, 남측공구 입주자의 통행 및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의 활용을 제한할 수 없음. • 지상 3층 옥상정원에 판매시설의 천창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판매시설 천창의 유지관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103동 인근 지상 2층에 공공청사의 중정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타시설의 구조물,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 설비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수경시설이 추가 계획될 경우 이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음. • 복합단지 내 타시설 및 부속시설의 태양광 집광판으로 인해 주변 인접동에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103동 필로티 내부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동별로 설치 여건 및 보관 가능한 개소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관소 설치로 인하여 일부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자전거보관대의 과다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는 2개층형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로 자전거보관대의 사용 여건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지하 3층 비주거주차장에 6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가 상이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물,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드라이에어리어 등은 본 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 폭, 경사 및 식재계획, 포장계획, 시설계획 등 전반적 조경계획은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공간(놀이터, 운동공간, 쓰레기분리수거함, 소방차 정차구간 등)의 위치는 크게 변경되지 않으나 그 외 공간별 규모, 형태,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와 무관한 일반 공간(휴게공간, 보행자전용동선 등)의 계획은 위치를 포함하여 변경될 수 있음. 조경계획의 개선안이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소방안전매트는 인·허가청의 의견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 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고가사다리차 및 소방차량 교행가능 구역에는 잔디 외의 식재는 불가하며 인·허가청의 의견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조성된 녹지 경관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없음. • 단지 내 자동관수시설의 스프링클러 배관경로 및 개수 등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식재수량 및 수종은 현장 여건 및 수급 가능한 식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드림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맘스태이션)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해당시설은 각 주동에서 시설까지의 거리가 상이한 관계로 사용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고,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구분	설계 공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엘리베이터의 동시 사용 제약에 따라 세대별 입주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원하는 입주 날짜 및 시간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실외기는 지붕층 및 지상돌출구간, 계단하부, 별도구획공간과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서측면에 커뮤니티센터가 별도도로 지상 3~4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서측면에 공공청사의 옥상구조물, 설비장비, 휴게공간 및(청사용)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조망권, 일조권,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남측공구 임대주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별도 시행 중인 행복주택 포함)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복합개발단지 내 타시설 및 부속시설의 공조기,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진동, 연무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주민공동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계획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복합 건축물의 타시설 및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제한, 소음 발생,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동행제한이 불가함. • 배치도 상에 표현된 드라이에어리어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드라이에어리어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엘리베이터홀 에어컨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공동주택 하부 지하 2층 ~ 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판매시설용 공조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접한 주동(101동, 102동, 103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측공구 106동 동측면에 공동주택의 가스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되고, 101동 북측면 업무시설동 1층 외부에 타시설의 가스공급을 위한 단독정압기가 설치되며, 위치 등은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1~103동 지하 7층, 지상 1층, 옥상에는 공동주택용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오수처리시설/우수저류조/부대시설 펌프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이와 연접한 주동(101~103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노출 시공되어, 인근 주차구역에 주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단,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 3층에 재활용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명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계단실, 드라이에어리어, 조경 패턴 및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은 인·허가 및 본 공사 시 규모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및 옥상 장식물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출입구의 유동인구로 인하여 주동 출입구 부근이 혼잡할 수 있으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판매시설의 테넌트 입퇴점, 유지보수 등 관련 공사 시, 소음·진동·분진·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합단지 내 타 용도시설(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호텔, 오피스 등)의 입퇴점 및 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를 제외한 복합단지 내부의 층수 표기는 사용 편의상 변경될 수 있음.(예. B1F→GF, B2F→B1F 등)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구분	설계 공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흠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세대별로 시설물과 거리 차이가 있어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공동주택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지하 5층 101동 위치에 교육연구시설의 지열기계가설이 위치하며 102동 위치에 판매시설의 지열기계가설이 위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생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 단지 내 옥외 지상식 소화전이 조경구간 내부 비상차량 접근 가능구역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개소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KT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기기지원과 홈네트워크의 연동 서비스로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계속 이용 시 세대별로 청약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발생함.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1~103동 지하 1층, 지상 4층/18층/32층(EPS/TPS), 지하6층(팬룸)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또한, 101~103동 옥상에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됨.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103동의 3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다만, 101동 저층부 4, 5호, 102동 저층부 1, 2, 3, 4, 5호, 103동 저층부 1, 2, 3호 라인의 경우 비상차량동선이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층부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합 특성상 현재 계획상 문주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본 공사 시 102동 남측 공동주택 차량진출·입구에 게이트형(벽면 입면 특화형) 1개소가 설치될 수 있음. 설계 및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단지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단지에 총 1개소의 단지 차량출·입구(복측공구 남측)가 있음. 다만,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각 동 필로티 천정 내부에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공용홀 에어컨용 실외기 배치로 인해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음.
공동주택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동 하부에 독서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101동, 102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서측면에 커뮤니티센터가 단독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101동, 102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남측면에 대형 휴게시설(티하우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북측면 지상 1층에 타시설의 주차장 진출·입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하부층에 판매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하부층에 드라이어어리어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하부층에 발전기 연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연무, 냄새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서측면 및 북측면에 타시설의 공조실 및 옥상에 공조기, 냉각탑, 환기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101동, 102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서측면에 판매시설의 천창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천창의 유지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101동 20층에 피난안전구역(기계, 전기, 소방 등 부속시설 포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4호라인 옥상에 소화수조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3, 4, 5호라인 옥탑에 비상 시 대피공간 및 헬리콥터 인명구조공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 2호 라인인 비상 시 20층 피난안전구역을 통하여 3, 4, 5호 라인 계단실을 통하여 대피공간 및 헬리콥터 인명구조공간을 이용하여야 함. 101동 124타입의 주방과 인접해 있는 101A, 101B, 101C타입의 경우 인접세대의 욕실 및 주방 직배기에 의해 소음 및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2동 하부에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101동, 102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서측면에 대형 휴게시설(티하우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남측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경관 간섭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서측면에 경로당이 단독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102동, 103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하부층에 판매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하부층에 드라이어어리어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후면에 판매시설의 천창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천창의 유지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102동 남측면에 북측공구와 남측공구를 연결하는 연결브릿지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구분	설계 공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동 20층에 피난안전구역(기계, 전기, 소방 등 부속시설 포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4호라인 옥상에 소화수조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3, 4, 5호라인 옥탑에 비상 시 대피공간 및 헬리콥터 인명구조공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1, 2호 라인은 비상 시 20층 피난안전구역을 통하여 3, 4, 5호 라인 계단실을 통하여 대피공간 및 헬리콥터 인명구조공간을 이용하여야 함. • 103동 동측면에 경로당이 단독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102동, 103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북측면 지상 1층에 타시설의 주차장 진출입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지상 1층에 공동주택용 배수펌프 발전기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하부층에 판매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3층 필로티 및 하부층에 드라이에어리어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동측면에 판매시설의 천창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천창의 유지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103동 북측면에 수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20층에 피난안전구역(기계, 전기, 소방 등 부속시설 포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남측면에 북측공구와 남측공구를 연결하는 연결브릿지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영향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3동 인근 지상 2층에 공공청사의 중정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101~103동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103동 서측에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보건소옥상에는 보건소의 계단실 옥탑, 설비용 장비, 옥상조형구조물,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및 차폐를 위한 트렐리스 등이 설치됨. 이로 인해 103동 인접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103동 옥상층에는 정확조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최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필요 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드라이에어리어,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 3층 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환풍 급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추후 본 공사 시 헬륨의 기능상의 이유로 드라이에어리어가 추가, 규격변경 혹은 이동 설치될 수 있음. 각 동 인근 지상층에는 드라이에어리어(제연 드라이에어리어 포함), 주차장 급배기 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에 따라 20층까지의 각 단위세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소방관 진입창 표시 및 자동해정장치는, PVC창호의 자동해정장치의 부재 및 보안문제에 따라, 유관 인허가청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미설치 됨. 향후 설계변경 예정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와 상이함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필히 해당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1동, 102동, 103동 1번코어, 2번코어 각 2대씩 21인승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 주동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비상용/승객용/장애이용 겸용으로, 화재시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해 전용되는 바, 화재시 피난은 피난계단을 활용하여야 함. • 각 동의 1층 공동현관에 에어샤워가 설치될 예정이고, 입주자 출입 시 바람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 • 세대 현관문 앞 및 엘리베이터홀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개인 물품을 적치할 수 없음. • 옥탑의 구조형식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7층 ~ 지하 5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1개소로, 북측공구 남측 102동과 103동 사이 하부 인근 진·출입 1개소 계획되어 있음. • 공동주택 하부 지하 4층 ~ 지하 3층은 타 시설의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음. 지하 4층 ~ 지하 3층 주차장을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공동주택(분양) 90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위치 및 대수는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분양)과 타시설간 분리 계획되어 있음.(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라 비상시를 고려하여 지하 5층이 타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나, 평시에는 방화셔터를 닫아 분리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음) • 주거복합 건축물의 특성상 당 단지의 택배 및 하역차량은 지하주차장의 최상층인 지하 3층 타시설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로높이 2.7미터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음. • 공동주택(분양)의 재활용창고 및 쓰레기보관소는 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조업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 3층 타시설 주차장과 연결되도록 계획함. • 지하 3층에서 연결되는 재활용창고 및 쓰레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포함)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통로는 유효고 2.3미터, 주차면 유효고는 2.1미터로 계획되어 있어 택배차량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하며, 택배보관 시에는 진출입구 인근의 택배보관소를 이용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북측공구의 남측 출·입구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별 주차거리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출·입구의 진입 및 진출차선의 형태 및 개수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공간 계획으로 인해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미터, 확장주차 폭 2.6미터, 경형주차 폭 2.0미터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 101동 하부 지하층에는 공동주택용 발전기실/전기실, 타시설의 기계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102동 지하층에는 공동주택용 기계실/저수조/정화조, 타시설의 기계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103동 지하층에는 공동주택용 연료전지실, 타 시설의 기계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접한 주동(101동,

구분	설계 공지 내용
	<p>102동, 103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주차장(지하 7층 ~ 지하 5층) 환풍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환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인접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기둥의 위치, 크기, 주차면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주거복합 건축물의 특성상 지하주차장 천장에 타시설의 배관, 배선 등이 일부 계획되어 있으며, 타시설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 등에 협조하여야 함.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벽(화재확산방지벽 포함)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3개소(급속 1대, 완속 22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사업장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1-1획지에 해당하고, 폭14미터 신설 도시계획도로(중(집)2-479)로 북측공구와 남측공구로 분리되나 하나의 단지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음. 북측공구는 공동주택(분양), 남측공구는 공동주택(임대)가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으나, 부대복리시설과 조경시설이 소설택되어 있으므로 함께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지하주차장 등 일부시설은 제외) 북측공구 공동주택(분양), 남측공구 공동주택(임대)의 소설택을 위한 연결브릿지를 임의 폐쇄할 수 없으며, 각 공구 공동주택 입주자의 통행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결브릿지에는 1-2획지(행복주택)과의 동선 연결을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1-2획지(행복주택) 입주자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음. 판매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 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101~103동의 일부 저층세대) 및 보행도로에 소음 및 진동, 환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이 101동 하부 및 후면과 102동 하부 103동 전면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됨.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차량 출입구)의 위치 및 규모, 개수,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관리사무소는 101동 후면 지상 3층에 설치되며, 북측공구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작은도서관은 남측공구 104동 하부 지상 1층에 설치되고, 지상 3층 옥상정원의 남북측 연결브릿지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북측공구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경로당은 103동 전면 지상 3층 옥상정원에 단독 설치되며, 북측공구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집은 남측공구 104동 동측, 106동 서측에 인접하여 지상 1층, 지상 2층에 단독 설치되고, 지상 3층 옥상정원의 남북측 연결브릿지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북측공구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존(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GX룸, 탈의샤워실 등) 및 컬처존(맘&키즈 카페, 맘스룸 등)이 101동 서측면 지상 3~4층에 분리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 및 시설명은 변경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내에 북측 문화공원과 연결되는 별도의 출입동선이 있으며,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동선으로 임의 폐쇄할 수 없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게스트룸 등)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가구가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단 추후 본 공사 시 냉·난방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단지(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해당)이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조건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보 후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어린이집 시설 사용권을 인계하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위의 사항을 승계하여야 함. 지하 7층 ~ 지하 5층에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각 동에서의 위치 및 이동 거리는 상이함. 세대창고의 위치 및 규모, 개수,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창고의 개수는 200여개 수준으로 세대수 대비 부족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창고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향후 관리규약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제반사항(정원,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판매시설,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운영 및 이용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무인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택배보관소는 지상 1층 주차장 진·출입구 인근(102동 하부)에 설치됨. 101동, 103동 전체세대 및 102동 1, 2호 세대는 무인택배보관소와의 이격거리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구분		설계 공지 내용
	보관소	있을 수 있음.
	기타사항	• 공공청사의 대지지분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지분으로 공동주택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단위 세대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와 현관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등)은 남, 북측 각 공구별로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됨. 단 소설믹스되어 있는 부대복리 시설은 남, 북측 전체 공동주택의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됨.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같은 주동 내 동일한 타입의 세대간 층간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세대 및 측벽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세대의 사용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법적면적은 동일함)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다용도실, 물쓰는 발코니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침실1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 및 현관의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음. 설치되는 결로방지 단열재는 조인트 마감을 위한 줄눈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무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가감, 가구 등 벽지 외 마감 일체)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물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4층 이상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도록 계획하여 비상시 아래층 세대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단, 피난기구는 상하층 좌우 교차되어 설치됨으로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동별 그 위치가 상이함. • 101동 저층부 4, 5호, 102동 저층부 1, 2, 3, 4, 5호, 103동 저층부 1, 2, 3호 라인의 경우, 비상차량 동선이 설치되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 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및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 시 세대 내 추가 실별가구(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 시 마감재별 내경치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74, 84B, 101A, 101B, 101C, 124, 138타입은 다용도실, 84A, 84C, 84D타입은 침실3, 125P타입은 드레스룸에 인접하여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 가동 시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실외기 가동 시에는 반드시 수동식 개폐루버를 개방하여야 함. • 125P타입 오배수 배관 위치에 따라 하층부 세대는 배관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의 단열은 현장여건 및 시공오차에 따라 부분적으로 동등 이상의 열관류율을 가진 단열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전 타입 실외기실은 세대 내 욕실 환기 배관의 가림을 목적으로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림판 설치 시 천정 및 벽체에 요철이 형성될 수 있음. 해당 마감의 규격 및 높이, 재질 등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용도실에 실외기실 스프링클러 가지관, 보일러의 연도, 가스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며, 세대 타입별 위치는 상이함. • 101A, 101B, 101C 타입의 침실3 및 124, 138 타입의 멀티룸의 커튼박스는 세대 내 화장실 환기 배관공간 확보를 위하여,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식이 다른 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101A, 101B, 101C, 125P 타입의 경우 침실1(안방)측 커튼박스가 발코니 스프링클러 공간 확보를 위하여,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식이 다른 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당 단지의 세대 천장고는 2,350mm(욕실은 2,200mm)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구분	설계 공지 내용
제공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별 기본제공 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 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 •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mm)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외산 벽타일(600*600)이 기본 제공되며 자재 특성 상 타일 색상 및 패턴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일부 타입(74 타입)에 한하여 욕실 국산 벽타일(300*600)이 제공되며 외산 벽타일(600*600)은 추가 선택품목이오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74타입) 욕실 위생기기 및 벽타일이 상이하게 적용됨. 벽타일 및 바닥타일 나누기가 주택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오니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팬트세대(125P타입)의 테라스 바닥 타일 마감은 개방형 발코니의 바닥 타일 마감과 동일 적용되며 자재의 특성 상 현장 여건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하여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추가 선택품목)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시공되는 타일은 타일간 베인(무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타입의 경우(74타입) 현관창고가 미제공되고 신발장 1개소가 제공되오니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청소시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사양은 인·허가 진행,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각 실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위치, 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에 따라 20층까지의 각 단위세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소방관 진입창 표시 및 자동해장장치는, PVC창호의 자동해장장치의 부재 및 보안문제에 따라, 유관 인·허가청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미설치 됨. 향후 설계변경 예정 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와 상이함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시 필히 해당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과 침실1(안방)의 창호는 PVC 분할형 이중창이 설치되며, 침실2, 침실3은 투시형 난간과 PVC 이중창이 설치됨. 단, 일부세대의 경우 침실3은 콘크리트 난간만 시공됨. 투시형 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단, 84C, 84D, 101B, 101C 타입의 오픈 발코니 부위의 창호는 발코니 출입을 위하여 낮은 턱의 PVC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창호 부위에 별도 난간 없음.)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 방지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발코니 및 실외기실, 테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1 전면 비확장 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단차 및 적용위치는 사용성을 위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전면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 빨래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84C, 84D, 101B, 101C타입의 개방형 발코니 바닥타일은 현장 여건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하여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의 난간은 101B, 101C, 84D타입의 침실 전면은 벽체형(타공강판 등) 난간으로 설치되고, 84C타입의 거실 전면은 유리난간으로 설치되며, 이는 관련 심의 및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전면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외부에 노출된 발코니는 외관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발코니이며, 빗물을 외부로 유도/배출시키기 위한 배출관이 설치되며, 입주자가 임의로 생활배수를 배출시킬 경우 하부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25P타입의 테라스는 주동의 외벽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테라스 벽면에 청소용 고리가 설치되며, 주동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자에게 승

구분	설계 공지 내용
	<p>인발은 자에게 테라스를 개방하여야 함. 또한, 해당 세대는 테라스 공간에 대한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P타입의 테라스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고, 우수 드레인인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테라스 건축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함. • 84C, 84D, 101B, 101C타입의 개방형 발코니 및 125P타입의 테라스에는 해당세대 및 지붕(세대 및 옥탑포함)의 우수처리를 위하여 외벽 및 바닥에 우수선홈통 및 트랜치가 본 공사 시 설치됨. 배수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라, 냉·난방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 공사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재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주방 및 화장실 배기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구성됨. • 드레스룸 및 팬트리 설치되는 세대는 드레스룸 및 팬트리에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방 및 거실의 온도조절기와 연동되어 조절됨. •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렌지후드가 상부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또한, 다용도실에는 가스배관과 계량기가 노출 설치되며,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침실)으로 설치됨. • 단위세대 에어컨 냉매 배관 기본 타입(거실, 침실)은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됨. • 세대 내 천장속 배관 및 덕트 설치 등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 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용 조명기구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함 검사업무 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정보통신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전 세대의 오배수 배관은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상부층의 배관 유지보수 시 당해 층 입주자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제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에 설치되며,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됨.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층별, 타입별 위치가 상이함.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 각층 세대 인접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됨.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커버가 설치됨. 단, 외관을 고려하여 설치높이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다용도실 세탁기용 수전은 마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마감 커버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매립될 수 있음.

구분	설계 공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알리미의 위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지 내 1개소 설치하며,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빛 공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KT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 사용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KT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기기지원과 홈네트워크의 연동 서비스로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계속 이용 시 세대별로 청약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서비스 요금 발생함. • KT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의 세부 기능은 입주 시 가능한 기술로 적용되며, 서비스 종류 또한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과 홍보영상의 서비스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서비스 항목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태그는 세대당 2개씩 제공될 예정임. • 산소발생기는 커뮤니티 시설의 독서실과 작은도서관 내 지정장소에 설치되나,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3층 102동 필로티 공간에 순찰 로봇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바리스타 로봇, 순찰 로봇, 방역 로봇, KT 리얼큐브, 홈노크존, 홈네트워크 통합보안, 스마트 게스트룸·경로당 등의 ICT 특화 서비스는 운영을 위하여 추가 관리비용(인터넷 개통 및 이용료, 서비스 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서비스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 및 세대에 제공되는 ICT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KT ICT 서비스는 추후 브랜드명 또는 서비스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 선택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천정물당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공사비는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 및 제품은 분양홍보물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제품을 지정불가 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추후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해당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현관중문(추가 선택품목) 설치 유무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주방 스타일업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 캐슬 미드웨이 선반 선택 시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이 설치되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주방벽은 국산타일(300*600), 일반 주방 행잉 액세서리 2종이 시공되고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 추가 선택품목 제공형태가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 74타입의 경우, 주방 스타일업 :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 캐슬 미드웨이 선반 선택 시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이 설치되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주방벽은 국산타일(300*600),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 일반 주방 행잉액세서리 2종이 시공되고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 추가 선택품목 제공형태가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불가함.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빌트인 식기세척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여닫이형 수납하부장이 제공됨. • 주방 TV(13인치)는 추가 선택품목 사항임. • 하이브리드쿡탑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됨. • 거실스타일업 벽부형 : 거실아트월(유럽산 세라믹타일) 및 일부 벽면 세라믹타일 및 시트판넬 마감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거실후면 일부 구간 픽처레일이 제공되며, 픽처레일, 단천정의 세대형별 설치위치는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시공되는 타일 및 시트판넬 나누기, 줄눈의 유무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타입(101A, 101B, 101C)에 한하여 제공되는 드레스룸 가구도어 + 시스템선반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팬트리 내부 마감은 벽지로 시공되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가구도어와 시스템선반은 미제공 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비스포크 1DOOR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됨. • 비스포크 1DOOR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수납탑장이 함께 제공되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 거실 스타일업 바닥형 : 유럽산 원목마루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특성 상 무늬, 컬러, 패턴 등이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 광폭 강마루가 시공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외산 주방가구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유럽산 수입가구가 제공되며 주택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위치, 크기 및 마감사양, 액세서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거실 간접조명 우물천정의 경우, 세대형별 우물천정의 크기,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일부타입(74타입)에 한하여 해당 옵션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제공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

구분	설계 공지 내용
	인 바람. • 각 실별 붙박이장 추가 선택품목의 제공형태가 세대형별 상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람.

※ 주의사항

-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코니를 비확장형으로 선택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가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X	기타 사항
---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5년 03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북측공구(금회 분양 아파트 위치) : 경로당, 독서실, 게스트룸, 맘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클럽, GX룸, 사우나), 외부 주민운동시설, 맘스카페 라운지&키즈룸, 맘스룸, 경비실, 관리사무소
- 남측공구(임대주택 위치) : 맘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외부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 소셜믹스 단지의 특성상 북측공구와 남측공구의 부대복리시설은 상호간 공유되는 것으로, 입주민 상호간에 통행방해 및 시설이용제한을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운영 및 이용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 [0.2016g] 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자양1 제정비축전구역 도시경비형 재개발사업
2. 신청자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3.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83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계층 차단성능	★★★★
2. 중량층계층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벽의 차음성능	★★★★
4. 고품소음(도르, 필드)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지정실 내부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동부분	★
4. 수리용이성 고정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치위거림 저감	-
3. 토종차 활용률 최소화	-
4. 열조각 간질필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자용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제단소 에너지밀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점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생성인자물(EPD)의 사용	★★★★
11. 제단소 차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차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차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한 자재의 보존시설 설치	★★★★
16. 병동관리	★★★★
17. 병동 및 유휴지허수 이용	★★★★
18. 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친화적	★★★
23. 비오동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을 저층의 적용	★★★★
25. 자연 환기 성능 확보	-
26. 단열체대 환기 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량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경관형상의 환경공미 계획	★★★★
6. 환경·유치원의 분포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편의성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열체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적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열조각 확보	★
13. 중대형위의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셉트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치 및 경관실비	★
2. 자연비	★
3. 내화성능	★
4. 수렴차단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안내	★★
6. 피난거리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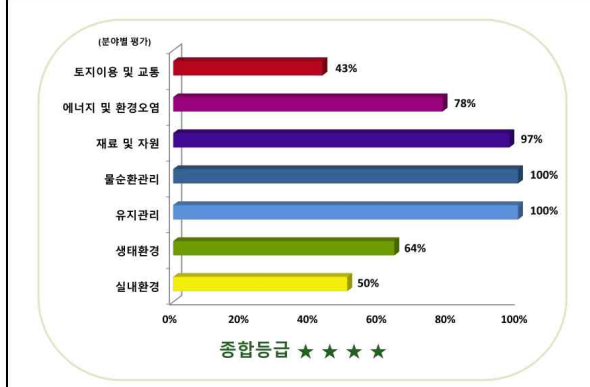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자양1 제정비축전구역 도시경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주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준공(예정)일 : 2022.08.31.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83 층수 : 지하7층, 지상48층 연면적 : 482,843.58㎡ 건축물용도 : 복합(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판매시설)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9-495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9.12.17. ~ 사용검사와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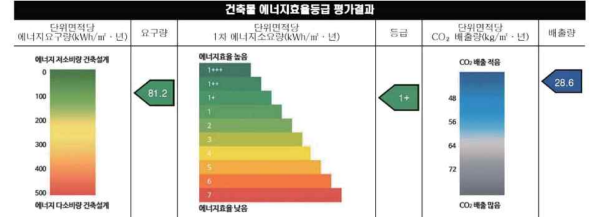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자양1 제정비축전구역 도시경비형 재개발사업 준공연도 : 2022년 09월 31일 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3 층수 : 지하7층 / 지상48층 연면적 : 482843.58㎡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해안건축	인증번호 : 19-주-에-1+-0376 평가자 : 오성찬 인증기관 :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0.1	75.2	57.6	15.6
급탕	30.7	35.4	26.2	7.2
총합	10.4	9.1	25.0	4.3
평가		3.2	8.9	1.5
합계	81.2	122.9	117.7	28.6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광, 무연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광,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종류,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장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



2019년 11월 04일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 1등급
창의 기밀성능(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 1등급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초지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초지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방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방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01292023-101-0003400	717,074,288,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포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㉔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㉕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㉖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사업주체)
상호	넥스트커넥트피에프비이(주)	롯데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6(자양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6910487	110111-001476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구조
회사명	(주)목양건축사사무소	(주)주신엔지니어링	한방유비스(주)	(주)지여이앤씨	동양 CNP
감리금액	8,506,773,000원	2,463,222,102원	880,392,920원	781,000,000원	137,5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주)무궁화신탁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시행사인 넥스트커넥트피에프비이(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 포함)만을 수행하며, 분양대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책임은 시행사인 넥스트커넥트피에프비이(주)에게 있고 (주)무궁화신탁은 면책되는 바, 수분양자는 (주)무궁화신탁에게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시행사 넥스트커넥트피에프비이(주), 시공사 롯데건설(주) 및 대리사무신탁사 (주)무궁화신탁 간에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필수사업비 등 분양목적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시행사 넥스트커넥트피에프비이(주), 시공사 롯데건설(주) 및 대리사무신탁사 (주)무궁화신탁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사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시공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대리사무신탁사 (주)무궁화신탁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의무 등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대리사무신탁사 (주)무궁화신탁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주)무궁화신탁은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부지상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채권이 있으며 동 선순위 대출채권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환불금 청구권 등 채권보다 우선하여 상환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대리사무신탁사 (주)무궁화신탁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상의 선순위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말소 책임은 시행사 넥스트커넥트피에프비이(주)에게 있고, 대리사무신탁사 (주)무궁화신탁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의 분양계약 체결 후 신탁사항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lottecastle.co.kr/APT/AT00394/main/index.do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번지 / ☎ 1533-1616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